

제400회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2건)에 관한 공청회 - 토론 자료 -

2022. 11. 21.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회

목 차

【 김 창 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	1
【 문 병 완 보성농협 조합장 】	7
【 서 대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3
【 이 종 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	17
【 고 창 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21
【 최 범 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	27

【 참고자료 】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2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45

김 창 한

-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공청회 토론회 자료

안녕하십니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입니다.

이상 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방안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를 농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지속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고, 힘들게 조성한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서 농지가 감소하고, 영농이 중단되고 농민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안이 영농형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영농형태양광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즉 농촌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지의 감소입니다. 20년 이상 발전소 유지를 위해서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약1만헥타르의 농지가 전용되어 사라졌습니다.

둘째 영농 중단입니다. 농지에 일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하부에서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임차농의 삶의 터전이 상실됩니다. 지주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임차농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네째 태양광설치에 따른 갈등이 격화됩니다. 지역민 대 외지인, 지역민 대 지역민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원인은 지역농민 보다는 외지인 또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지역 삶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옳이 지역거주민이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다섯째 농촌태양광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처럼 농사 보다는 태양광발전서를 짓기 위한 악용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저희도 농촌태양광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농촌태양광의 대안은 없을까요?

농촌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농지도 보전하고, 농업도 지속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도 늘리고, 농업인구도 늘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그 대안이 영농형태양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능한지 직접 실증도 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이란 상부에서는 태양광발전, 하부에서는 영농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부에서는 음지식물 뿐만 아니라 벼, 밭작물 등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작물과 재배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일본농수산성이 2013년부터 농용지구역에 영농형태양광에 한해서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만들어서 확산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증한 이래 전국에 65개사이트 이상 운영 중이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에서 직접 실증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농사? 됩니다. 발전? 잘됩니다. 농지 훼손? 없습니다. 농가 소득?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농지 감소를 방지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소득보다 높은 농외 소득을 20년 이상 마치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임차농의 경작이 가능합니다.

네째 영농형태양광은 농민만 해야합니다. 그래야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지역 농민의 직접 참여로 지역 갈등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영농형태양광을 제대로 보급하기 위한 제도가 농지의 잡종지 전용을 막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20년 이상) 즉 이번에 상정된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입니다.

지원법이 내용이 많지만 핵심은 일시사용허가로 농지 전용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여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3대 원칙,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을 지키면 됩니다.

물론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량농지 보전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시설기준을 잘 만들고 지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영농형태양광도 제한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검증이 되면 그 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하부 영농 실증이 부족하다라는 우려입니다. 기후와 작물이 유사한 일본은 2013년부터 현재 약 3,000개 이상의 영농형태양광 운영 중이며 다양한 작물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실증 이래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실증지원사업에서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된 작물부터 시작하고 점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세째 외지인의 편법 참여입니다. 영농형태양광은 그 취지에 맞게 농민만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 수익도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넷째 하부에서의 영농 중단입니다. 기껏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고 농사

를 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농민이 설치하면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에 하부 영농현황을 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농업경영체 현황 파악 때 같이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영농 중단 시 제재하는 형태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구조물의 안정성, 영농 적합성과 부실시공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시공지침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너지공단도 시공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협의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서 농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20년 이상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체계도 만들 예정입니다.

농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을 올리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걱정이 됩니다.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영농형태양광 보급의 첫걸음인 김승남 의원의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통과되어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정부관계자 그리고 가장 농민과 농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농민 단체분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병 완

- 보성농협 조합장 -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22. 11. 18.)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문병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영농기반 보존 필요

- 기후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식량위기 대두와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곡물시장 투기화 가능성 존재

*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 21%

- 농지보존 시급 : 경지면적 매년 급감(연평균 2.1만 ha↓)

* 171만ha(2013년) → 158만ha(2019년)

○ 과잉농산물 생산조절 가능 : 벼수확 감수율 ~20% 내외

- '22년 공급과잉으로 쌀값 최대 25% 폭락 예상, 정부 90만톤 시장격리(최대수량)

*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재고 증가, 코로나19 및 식습관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원인

* 정부대책 : 타작물재배 지원, 분질미 재배 등 쌀 재배면적 감소 추진

▶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단위 : kg)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량	68.8	67.2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재배면적(천ha)	68.8	67.2	65.1	62.9	61.9	61.8	61.0	0.8
10a당 생산량(kg)	542	539	527	524	513	483	530	9.8
총 생산량(천톤)	4,327	4,197	3,972	3,868	3,744	3,507	3,882	10.7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자료 : 통계청)

- 안정적인 농외소득 수단으로써 귀농귀촌 유인책 역할 가능
 - 지속적으로 농업소득 감소 및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 발생
 - * 2021년 농가소득 4,776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245만원의 76%)
 - 태양광시설 특화로 농촌마을 재생 필요
 -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113개로 대부분이 농촌지역



□ 개인 영농형태양광 실행사례

- 설치장소 : 답(畓) 650평을 잡종지로 전용 후 영농형태로 설치
- 소재지 및 운영자 : 전남 보성, 문병환(보성농협조합장)
- 설치(상업운전개시) 연도 : 2019년 8월
- 발전소 규모 : 99.7kWh
- 총사업비 : 196백만원
- 발전수익('20) :
 - 매출액(27,356천원),
 - 비용(14,588천원)
 - 순수익(12,768천원)



□ 영농형태양광 협동조합 추진 사례

- 보성군 옥암리 일대 4.5MW 규모로 추진 중이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불가,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담보 상태

구분	위치	면적㎡	발전용량 kw
1	보성군 옥암리 (영농형태양광)	139,097㎡	3,576.18kw
2		21,185㎡	579kw
3	보성군 옥암리 (수상형태양광)	57,485㎡	300kw
합계		217,767㎡	4,455kw



□ 영농형태양광 사업 추진방향

① 농지보전

- 농지설치 태양광은 영농형태양광만 허가하여 무분별한 농지 손실 방지
- 곡물자급률 목표와 연계한 농지보전 목표(150만 ha) 설정 및 관리 필요
 - * 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낮은 토지생산성을 농외소득으로 보완 필요
- 농지보전을 위해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② 영농지속

- 실제 영농행위를 하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가 필요
- 매년 영농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 중단 농가에는 불이익 부과
 - * 농협 조합원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부재지주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

③ 농업인 중심

- 발전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는 배제하고 농업인을 위한 발전 사업으로 추진
- 1인 발전 용량을 제한하여 대농 중심이 아닌 전체 농민을 위한 혜택 제공으로 전체 농민에 대한 소득 보완 도모

참고

일반형·영농형 태양광 수익률('22년 기준)

구분	규모	자금조달 ^{주1)}	발전수익 ^{주2, 주3)}	비용 ^{주4)}	손익
일반형	100kW(400평)	130,000천원	20,683천원	11,638천원	9,045천원
영농형	100kW(700평)	170,000천원	20,683천원	14,462천원	6,221천원

주) 1. 대출조건(시설설치비) : 일반자금 대출(80%대출, 5%이율,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2. 연간 발전수익: 시설규모 X 일발전시간(3.5h) X 1년(365일) X 발전단가
(※ 연간효율감소 0.8% 적용 후 20년 평균값)

3. 발전단가 : SMP 85.9원 + REC 85.201원(71.001X가중치1.2) = 171.101원/kW
(‘22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4. 비용 : 전기안전관리비, 보험료, 관리비용, 폐기물충당금, 인버터교체, 감가상각비 등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
 - 현행) 5년+3년(연장) ⇒ 변경) 20년+5년(연장)
 -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업보호구역 내 모든 토지 대상
 - 본인 소유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농업인 또는 조합으로 제한
 - * 농지전용 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30%

- 지자체 이격거리 완화 또는 예외적용으로 설치가능 부지 확대
 - 대부분(123개/155개 지자체)의 지자체가 도로·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 100m이상 적용 중으로 많은 농지가 거리규제 대상지역에 포함

-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한전 선로용량 우선 확보 등 혜택 제공 필요
 - 현재 일반형 및 영농형태양광 모두 한전 선로용량 부족으로 추진 난항

연왕 / 개선사항



서 대 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영농형 태양광 입법 공청회 토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농업부문 탄소중립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가치 설비용량 잠재량은 916GW (신재생에너지 백서)
- (백서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가능 시장잠재량은 393GW 수준(해상 제외)
 - 태양광(369GW)+육상풍력(24GW)
 - 폐기물(4GW) 바이오매스 등의 시장 잠재량은 미미한 수준
 - 지열 잠재량(334GW)은 냉,난방 등 열에너지(온도차에너지) 활용
- 실질 발전설비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육상 풍력을 중심으로 현실적 시장 잠재량은 **291GW 수준(85% 수준)**임 (예경연 및 에기연 별도 위탁연구).
 - 재추정 잠재량은 지자체별 이격거리 등을 적용(300m)하여 농촌지역(읍면지역) 잠재량을 재추정하였음. (기존 백서는 이격거리 100m 적용)
 -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273GW / 도시지역; 54GW (20%), 농촌지역; 219GW (80%).
 - 육상풍력 시장 잠재량은 18GW / 도시지역; 1.4GW (8%), 농촌지역; 17GW (92%).
- 가장 보수적 분석인 면적최소 활용 및 현 기술수준 적용시 170GW(태양광협회)
 - 농지(논, 밭, 과수원 등) 및 지목별 태양광 설치가능면적 중 최소면적 분석
 - 현 태양전기 효율 25%, 9.9m²/kW (3천평/MW) 가정
 - 기술발전에 따라 2030년 보편화 예상기술 적용시 250GW 수준
 - 태양전기 효율 34%, 6.6m²/kW (2천평/MW) 가정
- 현 규제와 기술수준, 재생에너지 우선 공급가능 잠재량은 129GW(에기연 ‘20.12.)
 - 현 태양광 효율 17.5% 고려, 수용성 확보에 문제없는 잠재량 (풍력터빈 3MW)
 - 기술 향상시 태양광 · 풍력 우선공급 가능 잠재량:약 300GW
 -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17.5% → 40%) 및 풍력터빈 대용량화(3MW → 20MW)
- 농림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약 2,400천toe 수준으로 국가 전체의 1% 수준 불과하며, 이를 감안한 탄소중립(RE10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8.5GW 수준
 - 농촌 에너지 소비량(4,200천toe)까지 감안하면 전체 23GW 수준 추정

□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관련 이슈

(1) 식량안보 및 수급불안정 요인 관리

- 농업의 근본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 농촌의 공간자원 활용과 입지 등은 식량안보와 농산물 수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
 - 쌀자급률: 92%, 곡물자급률 21% 수준
- 최근 팬데믹과 국제 정세불안 등으로 세계식량 수급 불안정, 세계 식품 및 곡물가격 크게 상승
 - FAO 세계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94.2('18) → 99.2('20) → 125.1('21) → 147.9('22 상반기)
 - FAO 세계곡물가격지수(cereal price index)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99.0('18) → 104.2('20) → 130.5('21) → 157.5('22 상반기)
- 농촌공간자원에 입지하는 태양광 등 시설은 대부분 진흥지역 이외 밭을 전용하는 것이 많음.
 - 주요 밭작물인 채소 등 수급불안정 요인 견제 필요
 - 특히, 밭의 식량작물인 콩, 옥수수, 밀 등 국내 생산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 농지관리 등 요구됨.

(2) 경제성 고려

-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한계 유발

(3) 사회·환경적 갈등

- 재생에너지 입지와 추진을 위한 공간계획 등 계획입지를 비롯하여,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면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정부, 지자체를 비롯한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
 - 주민참여 확대 및 보장
 - 공간계획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계획입지 필요
 - 발전단지 사업을 통한 이익의 재분배 등 이익 공유 체계 마련 필요
- 임차농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 영농활동을 위해 유무형 자산에 대한 준비와 투자를 비롯한 안정적 작물 생산에 기여한 다수의 임차농에 대한 대체지 마련 등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영농형 태양광 관련 이슈

- (식량안보 관점) 식량 및 농축산물 생산활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병행 가능하므로 농지 전용 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만 활용하는 것보다 농가 경제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후생 큼.
 - 생산성 감소: 벼 20% 내외 감소(다수확 품종이 대안), 발작물 등
 - 일반 영농에 비해 영농 시간 연장되므로 경영비 상승 및 농작업 주의 필요
 - 농촌 태양광에 비해 설치 공간(70% 내외) 및 비용(35% 내외) 증대
 - 농지에 영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나 관련 법규정 미비하며, 영농활동 지속이 관건

- (사회적 관점) 부채지주 및 임차농 문제 완화 방안으로 검토 가능
 - 임차인은 영농활동 지속하나, 생산성 감소, 경영비 증대 등은 재생에너지 수익 분배 등을 통해 완화
 - 재생에너지 시설을 일부 관리 및 유지 가능

- (환경 관점) 영농활동 지속을 통해 농지로서의 토양 관리 용이, 용수 및 농업 자원 관리 등을 통해 농업 및 농촌 생태계 유지 관리 기능
 - 영농 활동 중단 시 환경부담 가중 가능성
 - 여전히 경관 등 농촌다움에 대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필요

□ 해외(독일)사례

- 독일 농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보장, 환경성과 입지조건을 담보로 사회적 수용성 확보하고 법정 공간계획의 인허가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음.
 - 독일 역시 발전사업자와 투자자가 많은 농지 임차료 제시하며, 경지면적 감소 및 생태계 파괴 등 악영향 지적 및 사회적 갈등 유발
 - 주민주도(바이언 농가협회)와 환경단체들이 농가지붕, 농업에 비적합한 토지선별, 발전과 경작이 가능한 영농형(APV) 방향으로 개발 권장

- ‘쇠나우 시민발전소’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들 모임’이 발전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의 형태로 100% 무원전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태양광/태양열, 열병합,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시공 및 발전 사업을 병행, ‘20년 현재 조합원수 9,600명, 약 2억 3천 2백만 유로 매출, 모든 조합원에 3%의 이익금을 배당하고 있음.

이 종 원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한국 농업의 대들보가 될 젊은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 농수산대학교 이종원입니다.

저는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농업을 위해서도 스마트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보완적 자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별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나름 일조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면서 청년농 보육을 위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학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전문가 간담회 토론자로 추천을 받으면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립적 입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며,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무엇이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는 자세로 간담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력수급기본계획”,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 주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300 G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국내 여건상 현실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산지와 농지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안적 부지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농경지 훼손,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농촌태양광과는 다르게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기존 농지를 유지하면서 농작물 수확을 전제로 전력 생산도 병행하기 때문에 농업활동과 전력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와 고질적 고령

화 문제 해결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독일은 영농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에 과수 보호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쌀, 밀, 콩, 귀리, 옥수수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5미터 높이 이상의 철 소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업활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미국은 SolAgra 기업을 통해 다양한 작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은 전력수요 증가를 위해 Solar sharing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50 kW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농촌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성 문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과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내 이슈를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우량농지 훼손,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비농민의 농지소유 과열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농촌태양광의 사례를 통해서도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을 노리는 투기행위와 자연파괴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 수립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농식품부 사업은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것이며, 혜택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하는 것이기에 사업진행 과정상에 농민들의 경제적인 혜택이 감소 등의 정책 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농가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보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후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보급 후 농민 소득 향상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되는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책임있는 정책 구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에서는 ‘Agricultural Photovoltaic’이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태양을 농작물 재배와 전기발전에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Solar Sha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최소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혹자들은 태양광 발전이 영농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병행용 태양광발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된 두 법안은 잘 정리된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상호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문제로 발의된 법안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영농태양광발전’이 상이하므로, 용어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내용이 없습니다. 승인기간내 농지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이행 조건하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자 변경에 대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보존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서 해당사업 취소 또는 승인기간이 끝났을 때 폐기물 처리와 농지 원상 복구에 대한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에서 승인기간이 20년,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승인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단체장 승인하에 1회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율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내용이 위성곤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초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창 건

-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법안은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

1. 2021년 1월 김승남 의원은 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보호지구역으로 구분) 내 절대농지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위성곤 의원은 비진흥지역에 복합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전용 없이 농지에 최대 20년간 설치하려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 특히 김승남 의원의 법안은 영농형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존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업 생산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기에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3. 하지만 태양광 설치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과연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이 증대될 수 있을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①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설치 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에 연관되는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현재 태양광 설비 제작·판매는 한화, LG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있다. 때문에 태양광 설치로 농민들이 소득을 얻는다 해도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나 창업활동은 도시나 산업공단 지역에 발생하게 되어 농촌지역 경제 순환체계를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SK, GS, 한화, 두산 등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 체제로 개발되어 왔다. 또한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성과주의와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대기업의 개입은 영암 간척지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2개소 용량을 넘는 태양광 설치를 사업계획으로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촌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정부는 발전설비 설치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자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촌마을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는 업체가 마을 발전기금을 몇억씩 내고 몇몇 주민들과만 협의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해 마을 주민끼리 갈등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골프장 건설 등에서 보인 갈등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완도약산 태양광’ 인허가 과정이다.

개발신청 업체인 솔리스는 산자부에 약산간척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1달에 2번씩 주민설

명회를 개최했다고 하고 또한 태양광 반대위하고도 1달에 한번씩 토론회를 했다고 산자부에 보고했고 산자부에서는 확인도 전혀 안하고 주민수용성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인허가를 해주었다고 한다.

약산 태양광 설치 반대 주민들은 2021년 2월8일 관산포 태양광 에너지 주민협동조합 관계자와 마을 이장 등 5명을 사문서위조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시행사 솔리스와 관산포 이익일부 주민공유조합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절차를 왜곡시키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시행사 솔리스는 영암간척지 시행업체이기도 하다-SK가 최대 주주)

④ 임대료를 평당 6,000원씩 20년 치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광고 문구를 걸어놓고 절대농지에도 영농형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니 작년부터 계약서를 쓰자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생산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재 농지법은 국민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15년 후 농지의 84%이상을 비농민 소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현재적 상황과 자경 농민의 70%가 임차농을 겸하고 있는 한국농촌의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은 영농보다는 발전시설에 중점을 두는 농지훼손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 설령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농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할 것이다. 현재 전남지역의 농지임차료는 논의 경우 평당 1,000원 정도이다. 6,000원에 20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태양광 설치 농지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농지 임차료만 높아지고 결국 농민의 피해가 될 것은 자명하다.

⑤ 농민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등을 농민이 책임지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검증되지도 않았다. 태양광 설비의 운영 중에 생기는 문제는 농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태양광 설비 전문가를 초빙해 수리하거나 아예 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 보는 구조이고 그 혜택은 태양광 설비 제조 및 관리업체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4. 농지훼손을 막지 못할 것이다.

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안보에 필요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LH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처럼 현재 농지는 몇가지 편법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소유 가능하다.

그리고 농지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자산증산의 수단이 되어 있다. 헌법을 위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부터 그러하기에 법도 바뀌지 않고 있다.

② 영농형태양광 설치가 허용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농지뿐 아니라 비농민 소유의 농지가 자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영농형 태양광만 설치하고 키낮은 수목을 심겨놓고 관리하지 않아도 직불금과 영농형태양광 수익 그리고 자경 인정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까지 혜택을 가짜 농민들이 받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 도시권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비농민의 가짜 농민화가 전국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생산의 수단을 빼앗는 결과이고 궁극적으로 농지를 훼손할 것이다.

③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난에 대처해야 할 OECD 최대 식량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식량위기를 초래할 농지훼손을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 화석연료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제로 운동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① 기후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 탈화석에너지, 탈원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방향 전환은 정당한 것이다.

-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로서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개발의 모든 결정권, 운영권, 분배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주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

- 에너지의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환경파괴와 비용은 줄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반드시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③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생태계 파괴 방식을 탈피하고 도로, 공장, 주택, 창고, 빌딩,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한다.

- 공동체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

-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기후 범죄집단)에게 재생에너지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수익보다는 에너지 공급을 국가의 기본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정부는 공영화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단위 공영화가 기본축이 되도록 지자체 행정권을 넓혀 줘야 한다.(예: 독일은 법에 의해 지자체가 에너지 공급원을 결정함)
- 공영화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농업에서의 탄소중립, 공공농업 전환으로 실현하기 위한 농정확립이 필요하다.

1)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식량자급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농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제 농업생산은 전체 탄소배출에서 3% 정도의 비중이고 나머지는 토지 이용 변화(농지 전용 등), 산림 파괴, 가공/포장/운송 등으로 인한 배출로 12%가량 예측한다.

현재의 낮은 농산물 가격-과잉생산-많은 먹거리 손실(유통/가공)과 음식물 쓰레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 농민의 생계 보장, 농업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먹거리순환체계 구축과의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처럼 사료포함 식량자급을 21%밖에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식탁에 올라갈 80%의 수입농산물 운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서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것만 줄이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먹거리 또는 농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자급형 먹거리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동반되어야 농업에서의 탄소중립이 힘을 얻을 것이다.

- 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고 실행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목표한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을 지키기 위한 농지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에너지 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농가소득을 결부하려면 농지 소유 및 이용권한이 농민 것이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발전 시설은 농지훼손과 농지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농지를 훼손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자본의 수익을 위해 전남, 충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염해농지 절대농지 발전시설 허가 농지법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최 범 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실장 -

가. 들어가며

-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
 - 단, 농촌 현장에서는 자연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지 축소 등의 이유로 농촌 및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 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 실증연구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나. 검토사항

- 찬성 측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 자경농에만 해당
 - `21년 기준 103만1천 농가 중 임차농가는 52만6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51%에 달함(농림축산식품부)
 - 임차농가 중 자작과 임차를 병행하는 농가는 43만9천 가구이며, 순임차 농가도 8만7천 가구에 달함
 - 이러한 국내 농업 구조를 고려할 때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은 임차 농지 공급 축소로 이어져, 임차농가의 소득감소 우려
- 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비농업진흥구역 농지 활용도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이러한 이유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기반정비율이 높은 논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산업 활성화 시 밭 잠식 가속화 우려

- 이는 자칫 밭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밭농업 기계화 및 노지 스마트팜 등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 불가피

□ **고령 농업인의 은퇴 연기에 따른 농업 세대 전환 지연으로 농업 경쟁력 약화**

- 고령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진출 시 은퇴 시기 연장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는 청년 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우선순위 판단 필요

□ **농업생산 활동 판단 기준 부재에 따른 부정행위 등 각종 부작용 발생**

-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농업생산 활동 병행을 전제로 함으로, 농업 직불금 수령,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정책 수혜 가능
- 그러나 농업 생산성, 농가 소득 등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농작물 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책 혜택을 위한 형식적 활동으로 변질 우려

□ **농지법, 전기사업법 등 기존 타 법률과의 이해 충돌 발생 우려**

-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23년 적용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 판매사업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농지법,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을 우선 적용할 시 현장의 혼란 우려
- 또한, ▲발전용량 100kw 미만의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선구매 시책 마련 ▲송배전설비 등의 우선설치 등 각종 혜택과 관련해 실현 가능 여부 의문

다. 의견제안

- 에너지 정책 전환 또는 농가 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
 -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은 기본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임
 - 이런 상황에서 농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둘 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난립으로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영농형 태양광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자칫 농촌 난개발, 농업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한 접근 필요
 - 정부는 지난 `20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실증연구를 통해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증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농촌 공간 재생은 농업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공간계획 수립 및 정착이 우선
 - 난개발 및 각종 기피·유해 시설 설치로 농촌 잠재력 및 순기능이 훼손되며,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필요성 대두
 - 이에 범 농업계는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중
 - 농촌공간계획의 핵심 내용은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지구 세분화로 재생에너지지구 포함
 - 그러나 제정안에도 태양광 발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에 차질 우려
 - 따라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70
----------	------

발의연월일 : 2021. 3. 12.

발 의 자 : 위성곤 · 강득구 · 김성환
김정호 · 김진표 · 신정훈
양기대 · 양이원영 · 유정주
윤준병 · 이규민 · 이소영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이해식 · 정필모 · 허영
홍성국 의원(19인)

제안이유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과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란 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은 「농지법」 제28조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한다.

⑤ 이 법은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허가기간은 23년으로 한다.

제2장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을 발전시킬 시설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2. 제1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설립한 법인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제9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구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발전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

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결정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3배의 범위 이내에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발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4조

에 따라 승인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애 대하여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사용을 위한 표준 시설 및 설치 규격과 표준 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5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7
----------	-------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김승남 · 김정호 · 양정숙
윤재갑 · 송갑석 · 인재근
이인영 · 이용빈 · 주철현
이수진^(비) · 최종윤 · 민형배
김경만 · 진성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는 영농태양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일례로 영농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농지가 농지인지, 잡종지로 변경되는지에 대하여도 근거 법률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

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안 제4조).

마.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바.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자.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18조)

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수 있음(안 제20조)

파.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

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2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

조제1호의 농지로 보며, 농지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본다.

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일 것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하 “주민참여조

합”이라 한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령,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등의 수확량에 3년 연속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6.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기구매 등)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100kw미만 규모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승인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감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발전설비 설치 및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

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
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
하는 기관의 장애 대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
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태
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의 신청을 받아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지역주민,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농태양발전지구의 지정·변경,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보의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한다.

제1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

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 등

제21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23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